

□ 변경 대비표

변경시행일 : 2019년 12월 13일

신한BNPP베스트헤지펀드혼합자산투자신탁[사모투자재간접형]

집합투자계약 변경 내역

- (1) 기재사항 변경
  - 1. 환매지급기준일 단축
  - 2. 운용보수 인하
  - 3. 환매수수료 삭제

항목	정정전	정정후
1. 환매지급기준일 단축 : 제25조 (환매가격 및 환매 방법)	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아래 각 호에 따른 기준가격으로 한다. 1. 매월 10일부터 매월 24일까지 환매 청구 시 : 당월 24일(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)로부터 제14영업일(매월 24일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 시 제15영업일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2. 매월 25일부터 익월 9일까지 환매 청구 시 : 익월 9일(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)로부터 제14영업일(익월 9일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 시 제15영업일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	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5영업일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6영업일)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 ②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자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7영업일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8영업일)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
1. 환매지급기준일 단축 : 제25조 (환매가격 및 환매 방법) 계속	②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자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아래 각 호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1. 매월 10일부터 매월 24일까지 환매 청구 시 : 당월 24일(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)로부터 제20영업일(매월 24일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 시 제21영업일)에 환매대금 지급 2. 매월 25일부터 익월 9일까지 환매 청구 시 : 익월 9일(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)로부터 제 20영업일(익월 9일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 시 제21영업일)에 환매대금 지급	
1. 환매지급기준일 단축 : 제26조 (환매연기)	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18영업일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19영업일 전일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.	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5영업일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6영업일 전일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.
2. 운용보수 인하 : 제37조 (보수)	1. 종류 A1 수익증권, 2. 종류 A-e 수익증권, 3. 종류 A-g 수익증권, 4. 종류 C1 수익증권, 5. 종류 C-e 수익증권, 6. 종류 C-g 수익증권, 7. 종류 C-i 수익증권, 8. 종류 C-w 수익증권, 9. 종류 S 수익증권, 10. 종류 C-s 수익증권, 11. 종류 C-p 수익증권, 12. 종류 C-pe 수익증권 A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[ 4,000 ]	1. 종류 A1 수익증권, 2. 종류 A-e 수익증권, 3. 종류 A-g 수익증권, 4. 종류 C1 수익증권, 5. 종류 C-e 수익증권, 6. 종류 C-g 수익증권, 7. 종류 C-i 수익증권, 8. 종류 C-w 수익증권, 9. 종류 S 수익증권, 10. 종류 C-s 수익증권, 11. 종류 C-p 수익증권, 12. 종류 C-pe 수익증권 A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[ 0.100 ]
3. 환매수수료 삭제 : 제39조 (환매수수료)	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보유 한 기간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청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 ②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 1. 1년 미만 환매시 : 환매금액의 1% 2. 1년 경과 시 : 환매수수료 없음	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
투자설명서 변경 내역

(1) 기재사항 변경

- 1 환매지급기준일 단축
- 2 운용보수 인하
- 3 환매수수료 삭제
- 4 운용전략부분 주석 추가

항목	정정전	정정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<p>15.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성과보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, 이는 펀드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성과보수에 따른 환매수익자와 잔존수익자가 이해상충을 완화하고자 환매대금 기준으로 환매수수료를 부과합니다. 환매수익자는 환매수수료에 따라서 수익률이 예상보다 저조할 수 있으며, 투자 손실시에도 환매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손실 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. 잔존수익자는 환매수익자의 환매수수료가 면제되거나 환매수익자의 환매수수료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발생한 성과보수보다 작은 경우, 환매수익자로 인해 실현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성과보수를 부담하게 되어 잔존수익자의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</p>	삭제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(2) 상세 투자전략	<p>※ 상기 내용은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투자신탁이 투자할 수 있는 피투자 펀드의 투자전략에 대한 소개이며, 해당 전략의 펀드를 반드시 편입한다는 가정은 아닙니다. &lt;신설&gt;</p>	<p>※ 상기 내용은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투자신탁이 투자할 수 있는 피투자 펀드의 투자전략에 대한 소개이며, 해당 전략의 펀드를 반드시 편입한다는 가정은 아닙니다. ※ 다만, 정상적인 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형펀드 등 안전성이 높은 자산 위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.</p>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나. 특수위험	<p>성과보수 적용펀드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성과보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, 이는 펀드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성과보수에 따른 환매수익자와 잔존수익자가 이해상충을 완화하고자 환매대금 기준으로 환매수수료를 부과합니다. 환매수익자는 환매수수료에 따라서 수익률이 예상보다 저조할 수 있으며, 투자 손실시에도 환매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손실 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. 잔존수익자는 환매수익자의 환매수수료가 면제되거나 환매수익자의 환매수수료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발생한 성과보수보다 작은 경우, 환매수익자로 인해 실현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성과보수를 부담하게 되어 잔존수익자의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</p>	삭제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. 기타 투자위험	<p>환매수수료 관련 위험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펀드의 경우, 수익자가 환매요청시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며 동 환매수수료는 투자신탁재산으로 귀속됩니다.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성과보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, 이는 펀드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성과보수에 따른 환매 수익자와 잔존수익자가 이해상충을 완화하고자 환매대금 기준으로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며, 환매수수료에 따라서 수익률이 예상보다 저조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투자손실시에도 환매수수료 가 부과되기 때문에 손실 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.</p>	삭제
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. 매입 및 환매 및 전환기준 나. 환매	(2)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A. 매월 10일부터 매월 24일까지 환매 청구 시: 당월 24일(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)로부터 제14영업일(매월 24일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 시 제15영업일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20영업일(매월 24일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 시 제21영업일)에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 B. 매월 25일부터 익월 9일까지 환매 청구 시: 익월 9일(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)로부터 제14영업일(익월 9일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 시 제15영업일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20영업일(익월 9일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 시 제21영업일)에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	(2)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A.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5영업일(D+4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7영업일(D+6)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 B. 17시 경과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6영업일(D+5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(D+7)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. 매입 및 환매 및 전환기준 나. 환매	(3) 환매수수료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합니다. 1. 1년 미만 환매시 : 환매금액의 1% 2. 1년 경과 시 : 환매수수료 없음	(3)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. 매입 및 환매 및 전환기준 나. 환매	(6)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18영업일 전일(17시 경과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제19영업일 전일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	(6)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5영업일 전일(17시 경과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제6영업일 전일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.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	환매수수료 1. 1년 미만 환매시 : 환매금액의 1% 2. 1년 경과 시 : 환매수수료 없음	환매수수료 없음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다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집합투자업자보수 : 0.4	집합투자업자보수 : 0.01  집합투자업자 보수 인화에 따른 총보수/총보수비용/합성총보수비용 인하

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내역

- (1) 기재사항 변경
  - 1 환매지급기준일 단축
  - 2 운용보수 인하
  - 3 환매수수료 삭제

항목	정정전	정정후
표지	<p>집합투자증권은 [예금자보호법]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,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 따라서 원본 손실 위험, 증권 등 가격변동위험,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, 유동성 위험,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관련 위험, ETF 투자위험,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정보접근 제약 위험,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 기준가격 관련 위험, 성과보수 적용편드 투자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	<p>집합투자증권은 [예금자보호법]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,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 따라서 원본 손실 위험, 증권 등 가격변동위험,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, 유동성 위험,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관련 위험, ETF 투자위험,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정보접근 제약 위험,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 기준가격 관련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

투자비용	<p>총보수  A1 : 0.995  C1 : 1.345  A-e : 0.715  C-e : 0.895</p>	<p>총보수  A1 : 0.605  C1 : 0.955  A-e : 0.325  C-e : 0.505</p>
주요 투자 위험	<p>성과보수 적용펀드 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성과보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, 이는 펀드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성과보수에 따른 환매수익자와 잔존수익자가 이해상충을 완화하고자 환매대금 기준으로 환매수수료를 부과합니다. 환매수익자는 환매수수료에 따라서 수익률이 예상보다 저조할 수 있으며, 투자 손실시에도 환매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손실 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. 잔존수익자는 환매수익자의 환매수수료가 면제되거나 환매수익자의 환매수수료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발생한 성과보수보다 작은 경우, 환매수익자로 인해 실현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성과보수를 부담하게 되어 잔존수익자의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</p>	삭제
환매방법	<p>(1) 매월 10일부터 매월 24일까지 환매 청구 시 : 당월 24일(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)로부터 제14영업일(매월 24일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 시 제15영업일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20영업일(매월 24일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 시 제21영업일)에 환매대금을 지급  (2) 매월 25일부터 익월 9일까지 환매 청구 시 : 익월 9일(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)로부터 제14영업일(익월 9일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 시 제15영업일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20영업일(익월 9일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 시 제21영업일)에 환매대금을 지급</p>	<p>가. 17시 이전: 제5영업일(D+4)의 기준가격으로 제7영업일(D+6)에 지급  나. 17시 경과 후: 제6영업일(D+5)의 기준가격으로 제8영업일(D+7)에 지급</p>
환매수수료	<p>1. 1년 미만 환매시 : 환매금액의 1%  2. 1년 경과 시 : 환매수수료 없음</p>	없음